

[v]외래 []입원 ([]퇴원 []중간)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등록번호	환자성명	진료기간	야간(공휴일)진료
00052790	김옥주	2022-03-03 부터 까지	[]야간 []공휴일
진료과목	질병군(DRG)번호	병실	환자구분
정형외과			20220303-C107 (재발형) 금액산정내용
항목	급여		자보
	일부 본인부담	전액	비급여
	본인부담금	본인부담	선택진료료
	공단부담금		선택진료료 외
진찰료	0	0	0
입원료	1인실	0	0
	2·3인실	0	0
	4인실 이상	0	0
식대	0	0	0
투약 및 조제료	행위료	0	0
	약품비	0	0
주사료	행위료	0	0
	약품비	0	0
마취료	0	0	0
처치 및 수술료	0	0	0
검사료	0	0	0
영상진단료	0	0	0
방사선치료료	0	0	0
치료재료대	0	0	0
재활 및 물리치료료	0	0	0
정신요법료	0	0	0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0	0	0
CT진단료	0	10,000	0
MRI진단료	0	312,757	0
PET진단료	0	0	0
초음파진단료	0	0	0
보철교정료	0	0	0
선별급여 및 기타	0	0	0
65세 이상 등 정액	0	0	0
정액수가 (요양병원)	0	0	0
정액수가 (안화의료)	0	0	0
포괄수가 진료비	0	0	0
합계	① 0	② 322,757	③ 0 ④ 0 ⑤ 0
상한액 초과금	⑥ 0	-	선택진료 신청 []유 [v]무
요양기관 종류	[]의원급·보건기관 [v]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사업자 등록번호	124-95-26544 상호 정답병원	전화번호 031-232-9725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78 대표자 조		
2022년 03월 07일 14:36			
1. 일부 본인부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나, 요양기관 지역, 요양기관의 종별, 환자 자격,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 여부, 병실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래 본인부담률: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 ~ 6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원 ~ 2500원, 0% ~ 15%) 등 - 입원 본인부담률: 2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 ~ 10%) 등 * 식대: 50%(의료급여는 20%) CT·MRI·PET: 외래 본인부담률(의료급여는 입원 본인부담률과 동일)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선별급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본인부담률 * 치과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료: 2인실 40%, 3인실 30% * 전액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3. 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따라 같은 의료기관에서 연간 500만원(2015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에 따라 산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 금액, 환자가 내는 보험료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공단이 부담하는 초과분 중 사전 정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전액 본인부담 및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제외합니다. 4. "질병군 포괄수가"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병군 입원진료에 대하여 해당 입원진료와 관련된 여러 의료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정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질병군의 입원진료와 관련된 의료행위라도 비급여대상이나 이송치료 등 포괄수가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위 표의 기본항목 및 선택 항목명에 합산하여 표기됩니다.			

주(註): 진료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야간(공휴일)진료 시 진료비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진료 (예약) 접수증

등록번호	성명	구분
진료일시		
진료과	의사명	
① 이 진료접수·예약증을 해당일시에 직접 외래안내데스크에 접수 하십시오. ② 예약일시를 변경하고자 하실 때는 1일 이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③ 예약시간이 앞 환자의 증상에 따라 지연 될 수 있으나 양지 바랍니다.		

메 모

신분확인번호	현금영수증
현금승인번호	현금
신용카드 매출전표	합계 *****0
카드번호	납부하지 않은 금액 (10-11) 0
결제방법	
승인번호	
가맹점번호	
거래일자	
결제금액	
수납자	220
	일반사항 안내

-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요양 기관에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건강 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홈페이지: www.hira.or.kr)에 확인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 영수증 공제신청(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만 해당합니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문의 126 인터넷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대표전화: 031)232-9725
 http://www.jungdaphospital.co.kr